1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

■ 2025년도 보험료율을 전년도 건강보험료율로 유지 동결함

2024년도	2025년도
□ 건강보험료율 ㅇ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: 7.09% ㅇ 장기요양보험료율: 0.9182%	□ **건강보험료율 동결** ㅇ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: 7.09% ㅇ 장기요양보험료율: 0.9182%

2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 마련 (소득법 §12(3), §20①)

■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비과세 기준 합리화

	개 정(2025년)
<신 설>	□ **종업원등에 대한 할인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규정** ㅇ (**종업원등**) 자사 및 계열사의 종업원 ㅇ (**대상금액**) 종업원등이 자사·계열사의 재화 또는 용역을 **시가*보다 할인**하여 **공급**받은 경우 **할인받은 금액** * 할인적용 전 판매가격 또는 고시가격을 기준 등로 함 ㅇ (**적용요건**) **일반소비자와 차별**하여 **종업원등에게만 적용**되는 할인금액일 것 □ **할인금액 중 비과세금액** ㅇ (**비과세 금액**) Max(시가의 20%, 연 240만원) ㅇ (**비과세대상 요건**) ❶ **종업원등**이 직접 **소비목적**으로 구매 **및 일정기간* 동안 재판매 금지** * 구체적인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❷ **공통 지급기준**에 따라 **할인금액 적용**

<적용시기> ‘25.1.1.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

3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(조특법 §87)

■ 결혼 가구의 주택 마련 지원

종 전(2024년)	개 정(2025년)
□ **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**	□ **적용대상 확대**
○ (**대상**) **근로소득자***인 **무주택 세대주** * 소득요건: 총급여액 7,000만원 이하	○ **근로소득자**인 **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**
○ (**소득공제**) 납입액의 **40%**를 **근로소득금액**에서 **공제** (납입한도 **연 300만원**)	○ (좌 동)
○ (**적용기한**) ’25.12.31.	

<적용시기> (소득공제) ‘25.1.1.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
(비과세) ’25.1.1. 이후 지급받는 이자소득분부터 적용

현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거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에 한정됨에 따라 세대원인 배우자는 세제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출산장려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뿐만아니라 그 세대주의 배우자에게도 동일하게 소득공제 등 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취지임.

4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(소득법 §59의2①)

■ 출산 · 양육부담 완화

종 전(2024년)	개 정(2025년)
□ 자녀세액공제 ○ (공제대상자녀) 기본공제 대상자인 8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 ○ (공제금액) - 1명인 경우 : 15만원 - 2명인 경우 : 35만원 - 3명 이상인 경우 : 35만원 + (자녀수 - 2명)×30만원	□ 공제금액 확대 ○ (좌 동) - 1명인 경우 : 25만원 - 2명인 경우 : 55만원 - 3명 이상인 경우 : 55만원 + (자녀수 - 2명)×40만원

<적용시기> '25.1.1.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

5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한도 확대(조특법 §58①)

■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활성화

종 전(2024년)	개 정(2025년)
□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특례 ○ (기부대상) 기부자의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 ○ (세액공제율) - (10만원 이하) 기부금 × 110분의 100 - (10만원 초과) 11만원+10만원 초과분* ×15% * 사업자는 이월결손금 공제 후 필요경비 산입 ○ (기부 · 공제한도) 500만원	□ 공제적용 기부금 한도 상향 ○ (좌 동) ○ 500만원 → 2,000만원

<적용시기> '25.1.1.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

6 고액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상향 종료 (소득법 §59의4⑧)

■ 고액 기부에 대한 한시적 특례인 점 감안하여 종료함

<table>
<tr><th>종 전(2024년)</th><th>개 정(2025년)</th></tr>
<tr><td>□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율
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>공제율</th></tr>
<tr><td>1천만원 이하</td><td>15%</td></tr>
<tr><td>1천만원 초과분</td><td>30%</td></tr>
<tr><td>3천만원 초과분
('24.1.1.~'24.12.31.)</td><td>40%</td></tr>
</table>
</td><td>□ 고액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상향 적용기한 종료
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>공제율</th></tr>
<tr><td>1천만원 이하</td><td>15%</td></tr>
<tr><td>1천만원 초과분</td><td>30%</td></tr>
</table>
</td></tr>
</table>

7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조정 등 (소득법 §150③ · §169, 소득령 §221①)

■ 납세조합 세액공제 합리화

종 전(2024년)	개 정(2025년)
○ (조합원 세액공제) 매월 소득세액의 5%* * 조합원 1인당 100만원/연 한도 - (적용기한) '24.12.31.	○ 근로자 공제율 축소: 소득세액의 5%→3% * 조합원 1인당 100만원/연 한도 유지 - (근로자) '27.12.31.

<적용시기> '25.1.1.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

8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(조특법 §86의3①)

■ 소기업·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

<table>
<tr><th>종 전(2024년)</th><th>개 정(2025년)</th></tr>
<tr><td>□ 소기업·소상공인 공제부금(노란우산공제)에 대한 소득공제
○ (공제적용 소득) ❶ 또는 ❷
❶ (개인사업자) 사업소득
❷ (총급여 7천만원 이하 법인대표자) 근로소득
○ (소득공제 한도)
<table>
<tr><th>사업(근로)소득금액</th><th>공제한도</th></tr>
<tr><td>4천만원 이하</td><td>500만원</td></tr>
<tr><td>4천만원~1억원</td><td>300만원</td></tr>
<tr><td>1억원 초과</td><td>200만원</td></tr>
</table>
</td><td>□ 적용대상 확대 및 공제한도 상향
○ 법인대표자 적용기준 완화
❶ (좌 동)
❷ 총급여 7천만원→8천만원 이하 법인대표자
○ 소득공제 한도 상향
<table>
<tr><th>사업(근로)소득금액</th><th>공제한도</th></tr>
<tr><td>4천만원 이하</td><td>600만원</td></tr>
<tr><td>4천만원~1억원</td><td>400만원</td></tr>
<tr><td>1억원 초과</td><td>200만원</td></tr>
</table>
</td></tr>
</table>

<적용시기> ’25.1.1.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

9 세액감면기간 연장

(1)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(조특법 §19)

종 전(2024년)	개 정(2025년)
□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*에 대한 **소득세 감면** * 총급여 7천만원 이상인 자, 최대주주 등 제외 - (**감면대상소득**) 성과공유제를 통한 경영성과급 지급액 - (**감면율**) 소득세 50% 상당 세액감면 - (**적용기한**) '24.12.31.	□ **적용기한 연장 등** - (좌 동) - **'27.12.31.**

(2)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요건 완화 (조특법 §29의6①)

종 전(2024년)	개 정(2025년)
□ **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**에 대한 **소득세 감면** ○ (**감면요건**) 성과보상기금에 **5년 이상** 가입한 중소·중견 기업 근로자 ○ (**감면율**) - (청년) 중소기업 90%(중견기업 50%) - (그외) 중소기업 50%(중견기업 30%) ○ (**감면대상소득**) 만기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기여금 ○ (**적용기한**) **'24.12.31.까지 가입**한 경우	□ **감면대상 범위 위임근거 마련, 감면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** ○ **5년 이상 → 3년 이상** ○ (좌 동) ○ **'27.12.31.까지 가입**한 경우

(3)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특례 적용기한 연장

(조특법 §91의2O①)

종 전(2024년)	개 정(2025년)
□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○ (가입요건) 만 19~34세, 총급여 5천만원(종합소득금액 3,800만원) 이하 ○ (세제지원) 납입금액(연 600만원 한도)의 40% 소득공제 ○ (추징)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 시 감면세액 상당액* 추징 * 누적 납입금액의 6%	□ 적용기한 연장 ○ (좌 동)
○ (적용기한) '24.12.31.까지 가입분	○ '25.12.31.까지 가입분